
Policy and Law Report _Vol.15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8.22.~ 2022.08.28.) -

August 29,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정·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8월 24 일자로 시행함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 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는 외투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접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 관련 수탁기관 (KOTRA, 외국환은행) 전문위원회 - 국가안보위해 여부 사전검토 -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표 작성 ※ 필요시 전문분석기관에 분야별 국가안보위해 영향 분석 의뢰 ↓ 평가표, 의결서 등 심의결과를 정보수사기관, 주무부처, 외투위에 공유 검토요청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이 외투위의 검토를 요청 외투위 심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의결 산업부 산업부 장관의 결정 및 결정의 통보	2022-08-24

부처	내용	일시
보건 복지부	•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긴급한 위기로부터 보호 -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 등 추진 ②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추진 ③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 ④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 (예방) 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 - (검사·처방)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 - (입원치료) 중증환자 집중치료 및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 -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 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 -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⑥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 -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강화 - 바이오헬스 중심지 도약 등 추진	2022-08-19

부처	내용	일시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5대 핵심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함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이 정체되고 현행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전통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미디어의 공적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복잡·다양한 유형의 인터넷상 이용자 피해와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 요구가 커지고 있음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디어 혁신성장) 현행 제도의 과감한 혁신, 경쟁력 강화 지원 ② (미디어의 공공성)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 ③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체계 마련,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 ④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실생활 불편사례 해소, 디지털 폭력 대응 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 정책 협의체 설치	2022-08-23
금융위원회	•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방안 및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등 심의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발전 지원 - (금융회사)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플랫폼(App)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핀테크)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범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추진) -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	2022-08-23

부처	내용	일시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 마련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8.24. 시행,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10.20.부터 시행 예정) 시설부담금 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물류단지 내 원활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존 공원·녹지의 보존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존치시설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공성이 낮은 공장,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8-24
중소벤처 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8.23. 시행) 개인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 (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②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 (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022-08-2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③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 (제34조)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 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고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정행위 검증·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부터 제18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추가 - <본문1>의 안내사항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참여연구자 현황에서 학생연구자의 ‘현 학위과정’과 ‘전공’, ‘입학연도’를 기재하도록 추가 ※ 의견 제시기간 : 8/23(화)~9/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윤리권익보호과)로 제출	2022-08-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 전자보고 방식 규정 -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의견 제시기간 :8/26(금)~9/15(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교통환경과)로 제출	2022-08-26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조정대행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용 등 범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작아 범위반역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정액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는 원사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안 제6조의5) - 개정법이 위임한 입찰결과 고지 대상 공사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받는 건설공사로 규정함 - 입찰결과 고지는 개찰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알릴수 있도록 함	2022-08-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안 제8조의2) - 공시대상 기간(반기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6월 및 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 공시대상 항목에 관해서는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지급된 금액, 지급기간별 지급된 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 유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함 ③ 건설하도급대금 입찰결과 공개 및 공시 의무 관련 과태료 규정 (안 제18조, 별표4 및 별표5) - 건설하도급대금 입찰결과 공개 위반 1회마다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미공시에는 5백만원, 공시기한 전(후) 공시하였으나 주요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시 2백만원(2.5백만원), 주요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하였더라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보완한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④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정비 (안 제6조 제1항 제7호 다목, 제9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 -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절차·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서류를 보존하도록 한 규정의 조정신청자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하고, 조합의 대행 신청절차 및 중앙회의 서류제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중앙회 조정 결렬시 분쟁조정 신청사유에 추가함 ⑤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안 제13조의2) -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금액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10억 원으로 규정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함 - 그 외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⑥ 정액과징금 기준 상향 (안 별표 2) - 기술유통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작아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20억원으로 상향 규정함 ⑦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안 별표 3) - 연동계약 체결실적 및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8/25(목)~10/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 정책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어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이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될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법인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제1항)	2022-08-25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최근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임.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 제정 당시인 2008년의 로봇산업은 초기시장 형성단계에 있었으나, 최근 로봇산업은 인공지능과 결합으로 급속한 성장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연구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특정 분야에서 신제품이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자 함. 더 나아가,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고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2022-08-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또한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전인증 제도 실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②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의2 신설) ③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현행 제20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삭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⑤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안 제40조의4 신설) ⑥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 누락되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2조의3 신설) ⑦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4조의2 신설) ⑧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 (안 제47조) ⑨ 자료제출·검사의 대상자(인증기관 등)에 대한 현행법 제49조를 보완함 (안 제49조) ⑩ 2028년 6월 2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 「<u>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스크림류의 경우에는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어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통·보관 과정에서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용얼음의 경우에도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다수 매장의 식용얼음에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 신설)	2022-08-22
	• 「<u>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u>」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제8호)	2022-08-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현의원 등 11인)」 기술발달로 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유전자 편집, 푸드테크 등 바이오기술 활용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등을 통해 국가의 보건 위기 상황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 및 인식 확산이 중요함 이에 혁신제품 등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마련하여 제품개발 초기(R&D)부터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규제당국과 산업계에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이 활용·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제품의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선순환 지원체계를 규제과학의 의미로 도입하고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정 법률안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변경함 (안 제명) ②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규제과학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보칙 등 6개의 장(章)을 구분함 ③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 등’의 정의에 추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④ 체계적인 규제과학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식품·의약품규제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및 제6조) ⑤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되어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합리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 추진 근거를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⑥ 혁신기술의 제품화를 개발단계부터 지원하기 위해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⑦ 규제과학의 기반 확립·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계획수립 및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2022-08-2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⑧ 규제과학의 수준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민관·국제 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⑨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의 업무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 (안 제21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에서 생쥐가 혼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신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 식재료 공급 등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3 신설 등)	2022-08-25
환경노동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함 이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 중 종이팩을 일반팩(합성수지가 부착된 종이팩)과 멸균팩(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으로 구분하고, 각각 색깔로만 구분하여 종량제 배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팩의 출고량은 매년 일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멸균팩의 경우 2014년도에는 16,744톤이었던 출고량이 2022년도에는 32,128톤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멸균팩에 대한 적절한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일반팩의 재활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이팩의 제조자 등으로 하여금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4조)	2022-08-2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국토교통위원회	• 「<u>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u>」 현행법에서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에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조사에 따라 결함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자동차들은 최대 배터리 충전 용량에 제한이 발생하였고, 차주들은 광고·설명 등을 통해 고지받았던 차량의 최대 주행가능거리보다 성능이 떨어진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차량 성능 저하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2022-08-24
보건복지위원회	• 「<u>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u>」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22.1월)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구조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및 감리 부실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건설공사 참여자와 일반공중(公衆) 5명 이상 사망하거나, 일반공중(公衆) 3명 이상 사망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 (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83조제10호의2 신설) ②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83조제7호의2)	2022-08-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에 대상 추가함 (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④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함 (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8/30(화) 14:00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안건처리	
	9/1(목)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 개회식, 개회식 직후 본회의 개의, 안건 처리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8/29(월)	「소셜시그널」 제27호 발간 - 생활물가 초비상	
	8/3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호 발간 -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8/31(수)	「World & Law」 2022-16호 발간 - 반도체 기업, Welcome to USA?	
예산정책처	8/29(월)	「NABO 재정동향 & 이슈」	
	8/31(수)	「NABO 경제동향」 8월호 발간	

[별첨1] 제399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8/29(월) 10:00	인사청문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8/29(월)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
	8/30(화) 09:30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운영위	8/30(화)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
법사위	8/29(월) 13:30	전체회의	- 고유법 및 타위법 심사 - 검찰총장 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정무위	9/2(금) 10:00	인사청문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한기정) 인사청문회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방위	8/29(월)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8/30(화) 09: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8/31(수)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행안위	8/29(월)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업무보고
	8/30(화) 09: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9/1(목)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산자위	8/29(월) 10:00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회 보고의 건
복지위	8/30(화) 10:00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31(수)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심사
	9/1(목) 09:3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의결
정보위	8/30(화) 09:3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예결위	8/29(월) 10:00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1(목)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9/2(금)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9(월) 10:00	금융 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판 BTS	윤상현 의원실, 한국경제TV	도서관 소회의실
8/29(월) 10:00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3(화) 14:00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김용판, 오영환, 이은주,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8/29(월) 10:00	미래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비전 세미나 - 세계 제4세대 소형원자로 개발 동향 및 국내 개발 전략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29(월) 10:00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서범수 의원실, SH공사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9(월) 14:00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동만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9(월) 14:00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29(월) 14:00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30(화) 10:00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정 책세미나	김희곤 의원실,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의원회관 2소회의실
8/30(화) 11:00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8/31(수) 10:30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은?	신영현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8/31(수) 13:30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 -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신영현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8/31(수) 14:00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이용우, 민병덕, 오기형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목) 10:00	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 행 방안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목) 10:0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서범수, 김영선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1(목) 15:00	디지털시대, 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설산업 발전 방안	김민기, 김정재, 최인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9/2(금) 10:00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 - 미중 경제전쟁,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2(금) 14:00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 대한민국 화장품산업 현재와 미래	김상희, 김원이, 고영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금) 14:00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 부산·울산·경남 편	조경태 의원실	부산대 건설관3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4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8/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1호 발간 -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입법례	
	8/25(목)	「현안, 외국에선?」 제42호 발간 - 영국의 미성년 부모(Young Parents) 지원 정책	
입법조사처	8/24(수)	「NARS 입법·정책」 발간 -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2(월) 13:30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8/23(화) 14:00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4(수) 10:00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 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윤창현·최재형 의원실, (사)한국기업법연구소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5(목) 14:00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탄 -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을지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의원회관 306호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